

사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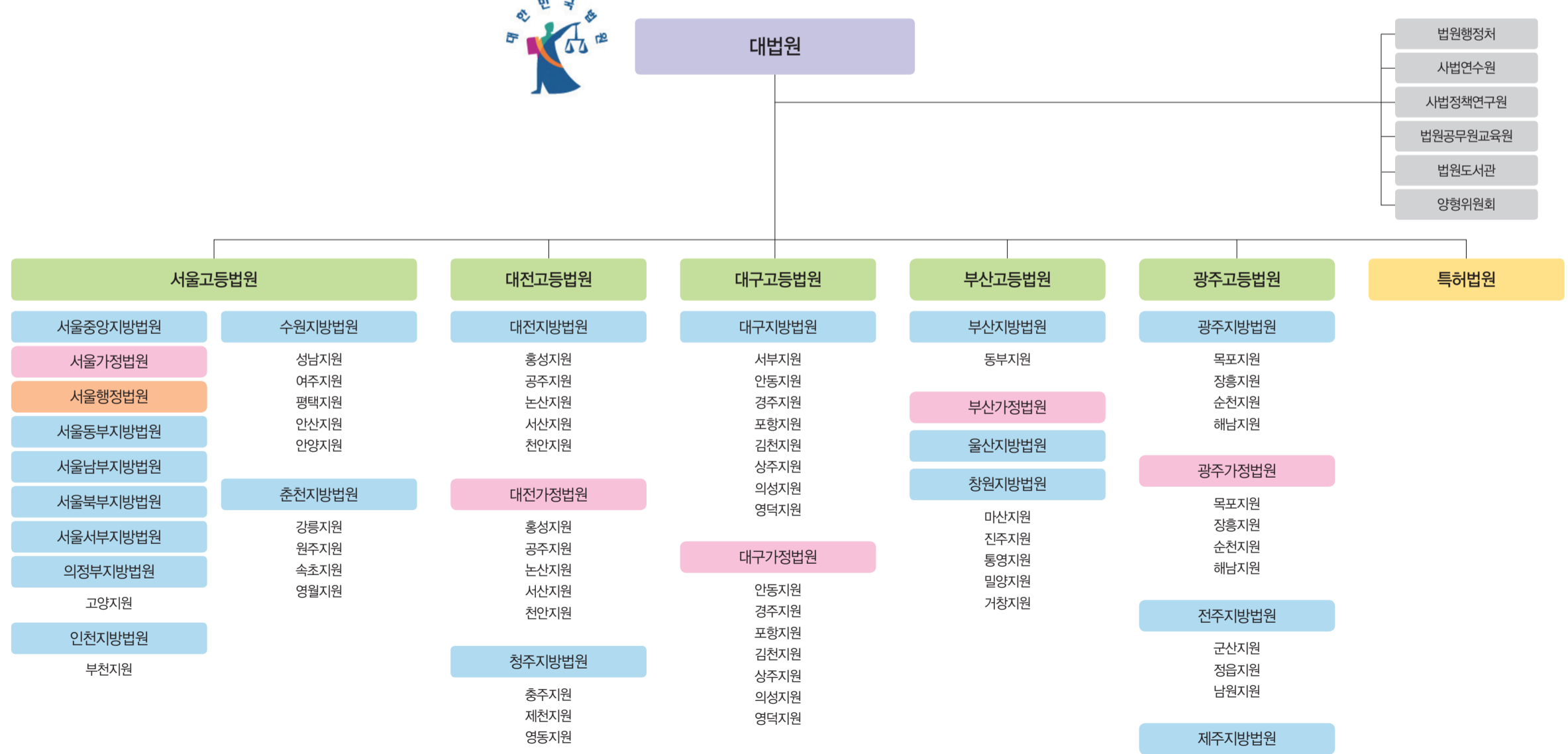
사법부는 법에 따라 재판을 하는 기관으로서, 대법원 및 대법원이 관할하는 모든 기관을 통틀어 이른다. 사법부의 조직 체계는 대법원 산하에 고등법원, 고등법원 산하에 지방법원, 가정법원, 지방법원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등법원 산하 법원들은 지역을 기반으로 분포되어 전국 각지의 사람들이 민사, 형사, 가정 소송을 진행하는데 왕래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 특수법원으로서 대법원 산하에 특허법원이 있다.

대법원은 삼급 제도의 최고 법원으로서 상고 사건과 재항고 사건을 최고심으로 판단하고, 1회의 재판으로 끝나는 단심 사건의 관할 법원이며, 대법원의 거의 모든 사건은 상고심에 해당한다. 이렇듯 최고 법원으로서 최종 심판권을 가지는 대법원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관한 소송과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 및 당선인의 효력에 관한 소송 등에 대한 전속 관할권을 가진다. 또한 대법원은 명령과 규칙의 위헌 심판, 각급 법원 판결의 위헌 심판 등을 통해 헌법 재판권을 갖고 있다. 이러한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원장(재판장)과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되어 출석 과반수 의견에 따라 심판하는 전원 합의제와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되어 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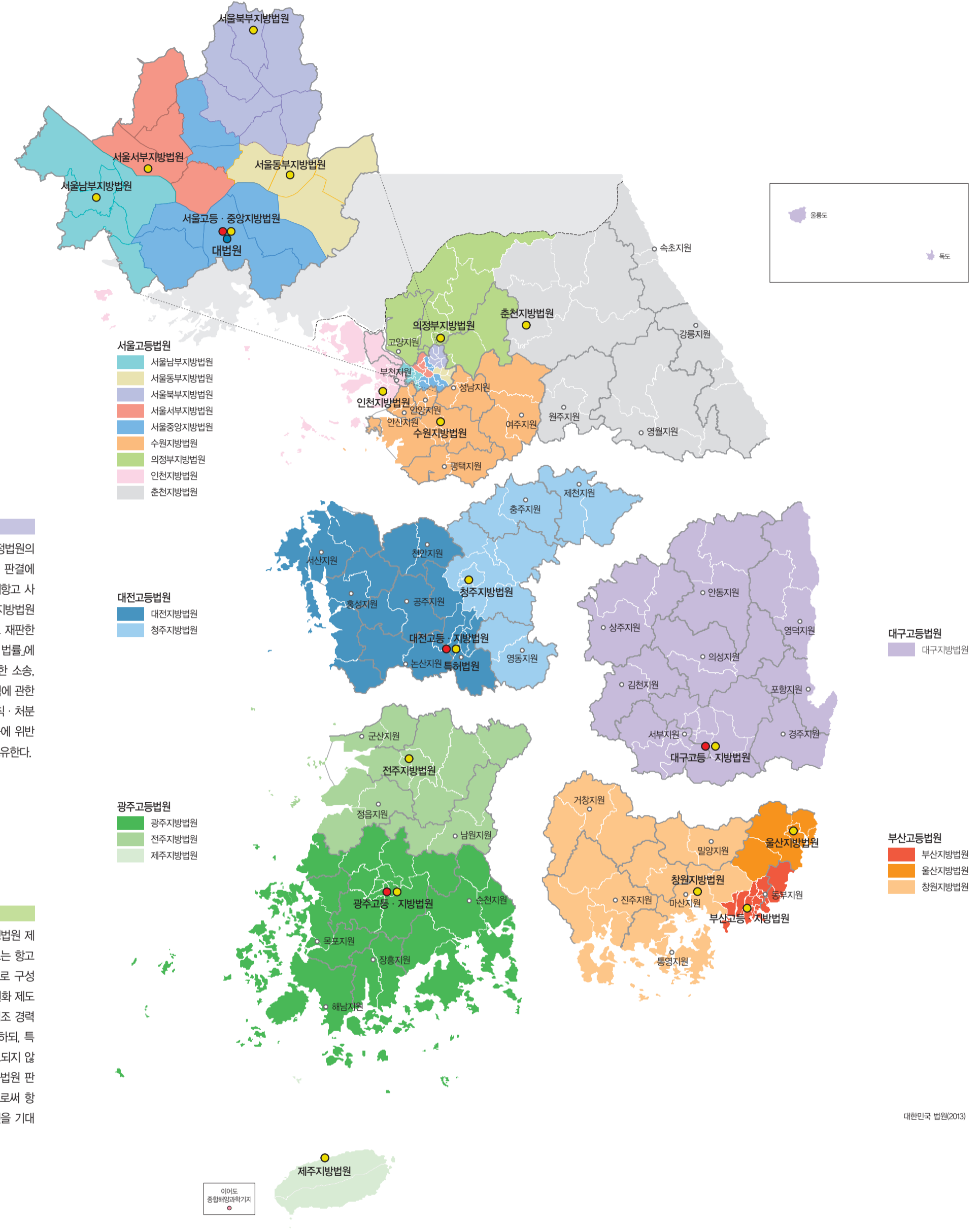
의결 일치에 따라 재판하는 부에 의해 행사된다. 대법원장은 대법원장과 13인의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임기는 6년으로 중임할 수 없다. 또한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임기는 6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대법원 산하에는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등의 기관과 양형위원회를 두고 있다. 사법 행정은 전체 법원의 조직, 인사, 예산, 회계, 시설 관리 등과 같이 사법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행정

활동이다. 대법원장은 사법 행정 사무를 총괄하고, 사법 행정 사무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특히 대법원장은 사법 행정 사무의 지휘·감독권의 일부를 법원행정처장, 각급 법원의 장, 사법연수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또는 법원도서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대법관 중 1인이 담당하는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법원행정처의 모든 사무를 관장하고, 법원의 사법 행정 사무를 감독한다. 중요한 사법 행정 사무에 관해서는 대법원장이 대법관회의의 의견을 거쳐 처리한다.

사법부 조직도



사법부의 구성 전국 법원의 분포



대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또는 가정법원의 민사·형사·행정·특허 및 가사 사건 판결에 대한 상고 사건과 결정·명령에 대한 재항고 사건을 중심으로 심판하고, 특별한 경우 지방법원의 재심 판결에 대한 비상 상고 사건도 재판한다. 「해양 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 및 당선의 효력에 관한 소송에 관해 전속 관할한다. 명령·규칙·처분 또는 행정 기관의 조치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지에 대한 최종적인 심사 권한을 보유한다.

고등법원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 합의부 또는 행정법원 제1심의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 사건을 심판한다. 심판권은 판사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행사한다. 법관 인사 이원화 제도의 시행으로 고등법원 판사는 상당한 법조 경력 이 있는 사람 중에서 지원을 받아 임명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법원으로 전보되지 않고 고등법원에서만 근무한다. 이는 고등법원 판사의 경력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항소심 재판이 더욱 충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지방법원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은 기본적으로 민사 및 형사 사건을 제1심으로 재판한다. 제심 재판은 원칙적으로 단독판사가 심판하지만, 특히 중요하다고 법률이 정하고 있는 사건들은 합의부가 심판한다. 현재 전국에 18개의 지방법원이 있으며, 관할 구역 내 지원과 시·군법원 등을 둘 수 있다. 현재 전국에는 40개의 지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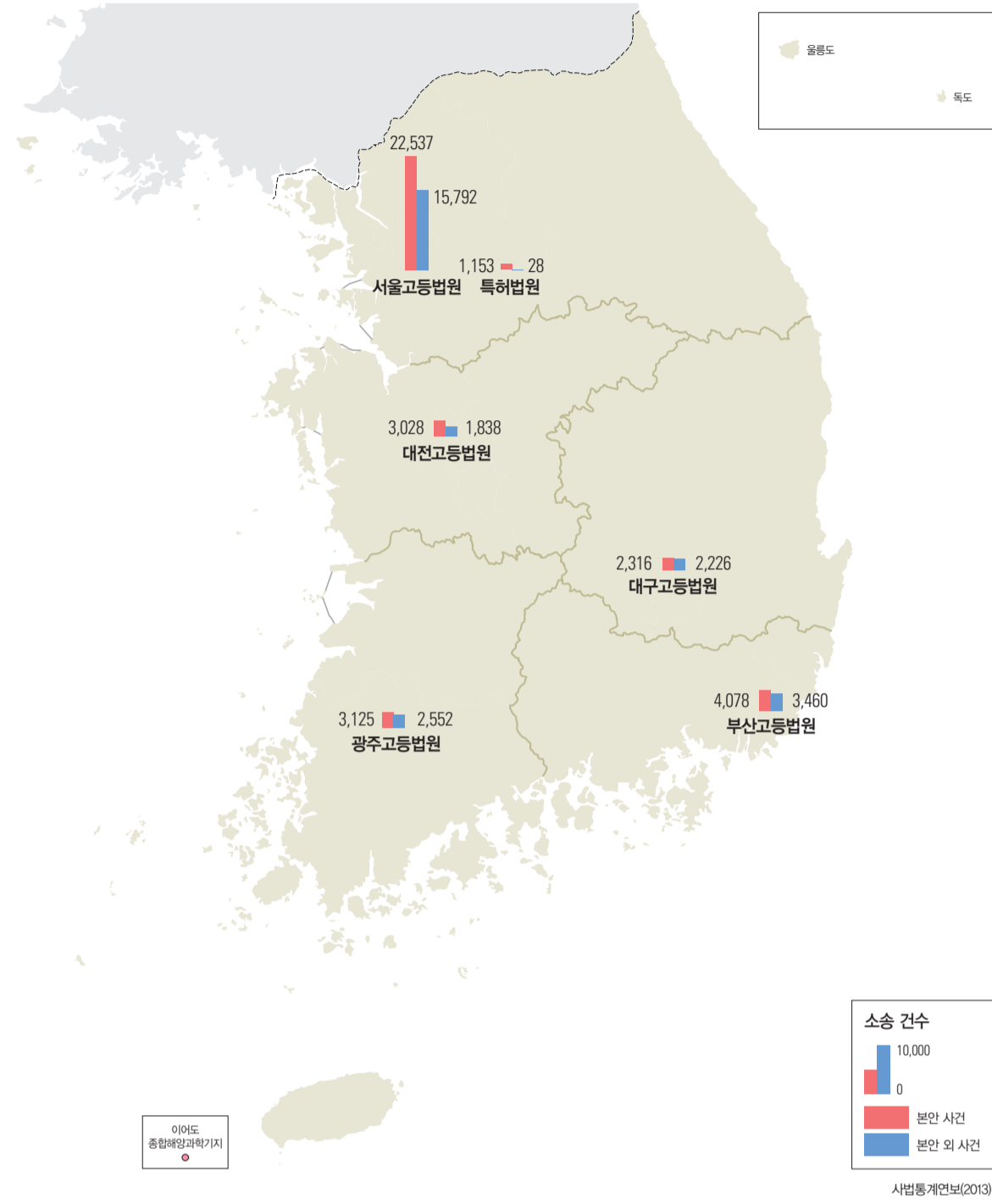
가정법원
 지방법원과 동급 법원으로서, 가사 사건과 소년 보호 사건 등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1963년에 설치하였다. 가정법원 또는 가정법원의 지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의 지원이 그 역할을 한다. 1998년부터는 「가정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과 더불어 가정 폭력 사건에 대한 심판권도 보유한다. 가사 사건은 법관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 또는 단독판사가 담당하고, 소년 보호 사건, 가정 보호 사건은 단독판사가 담당한다.

행정법원
 1998년 서울에 처음 설치되었다.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행정 사건은 행정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지방법원 본원이 이를 관할한다. 서울행정법원은 조세, 토지 수용, 근로, 일반 행정 등의 사건을 심판한다. 과거에는 행정적 구제 절차를 모두 거쳐야 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으나, 행정법원 설립에 따라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한 행정 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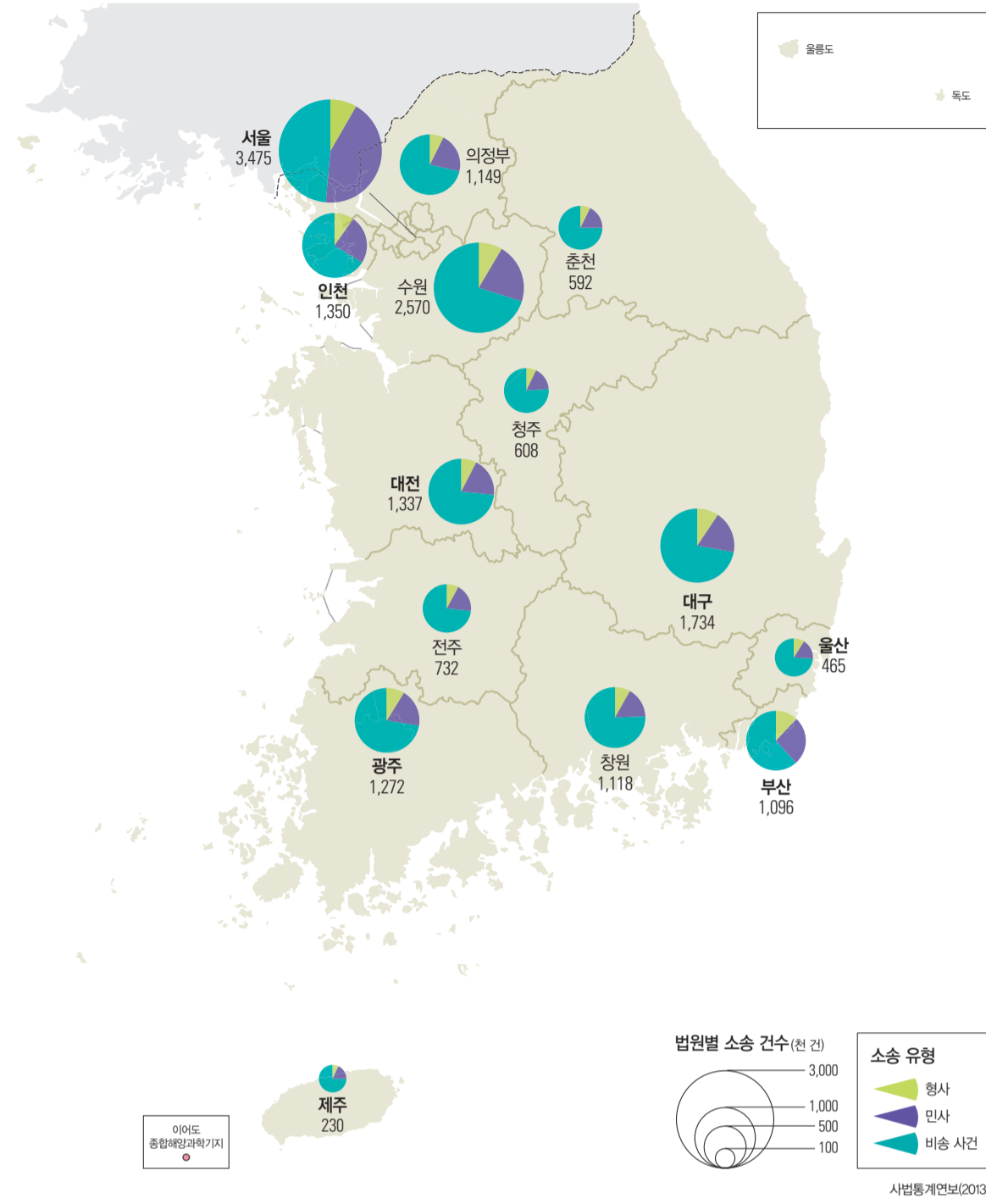
특허법원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불복 소송을 제1심으로 맡는 고등법원급 법원으로, 그 판결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한다. 자연 과학이나 공학을 전공한 기술심리관을 전문 기술 분야별로 배치하여 특허 및 실용신안 사건의 기술적인 사항에 관해 재판부의 이해와 판단을 보조하도록 하였다.

사법 실무

고등법원별 소송 사건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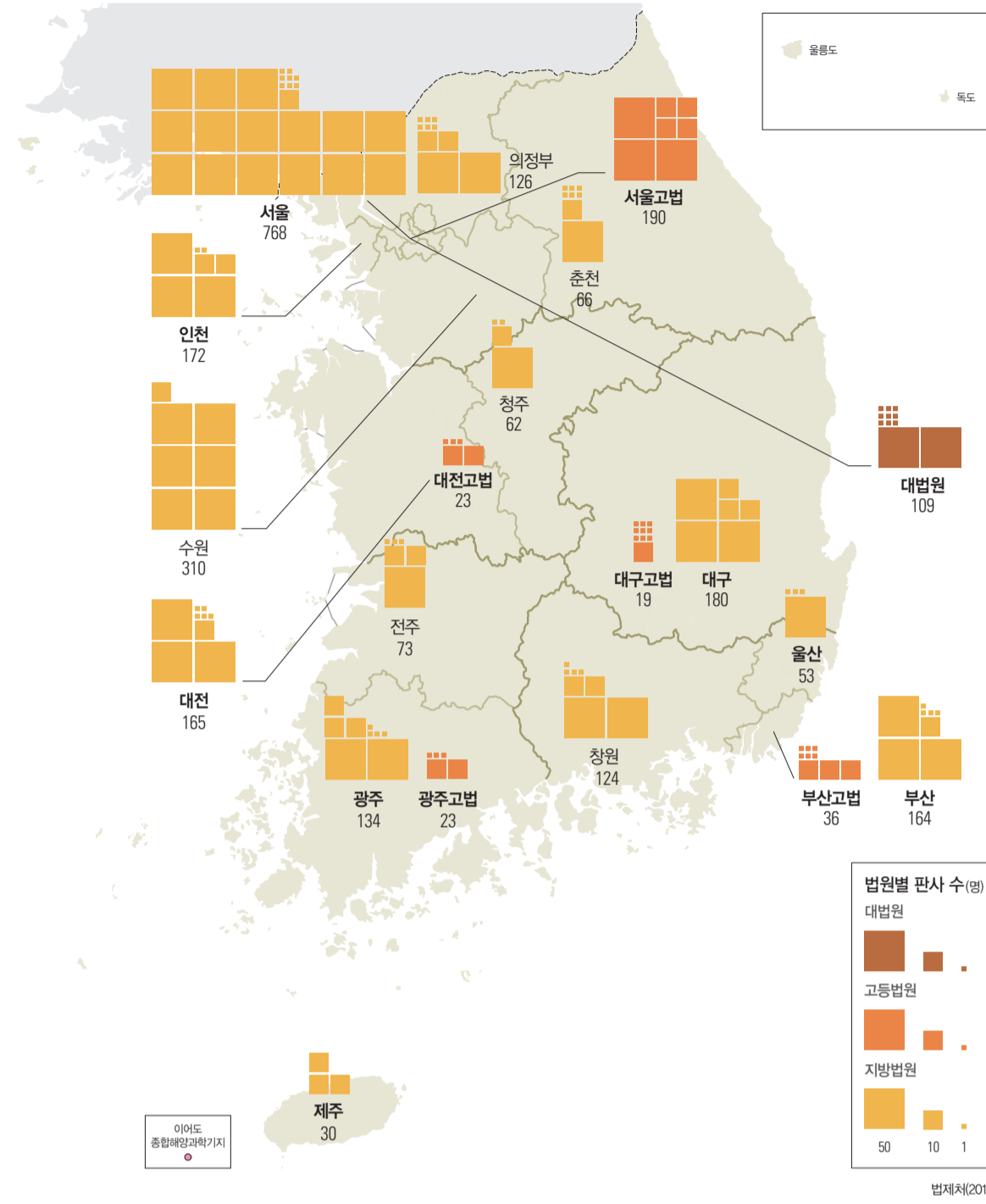


지방법원별 소송 사건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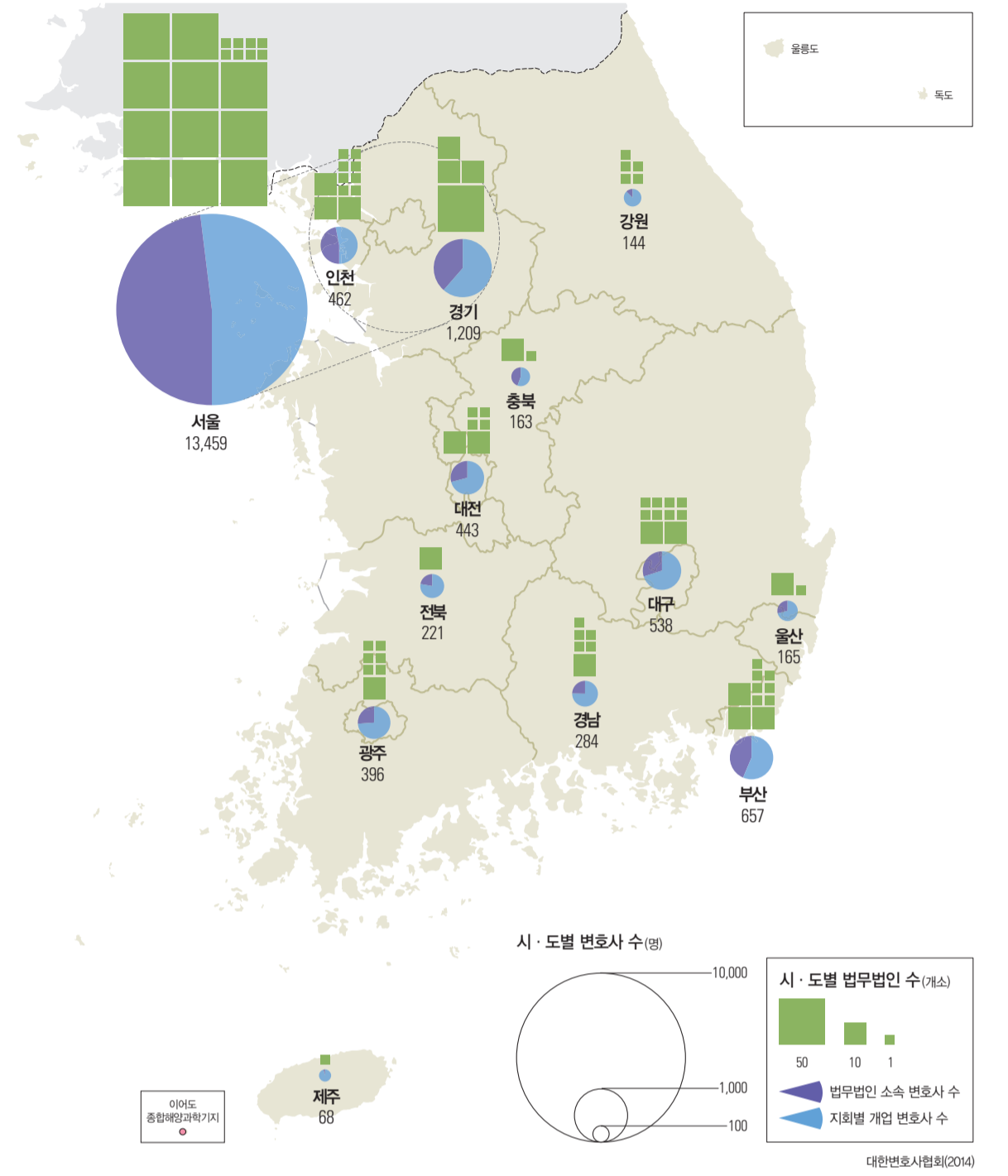


법률 서비스

법원별 판사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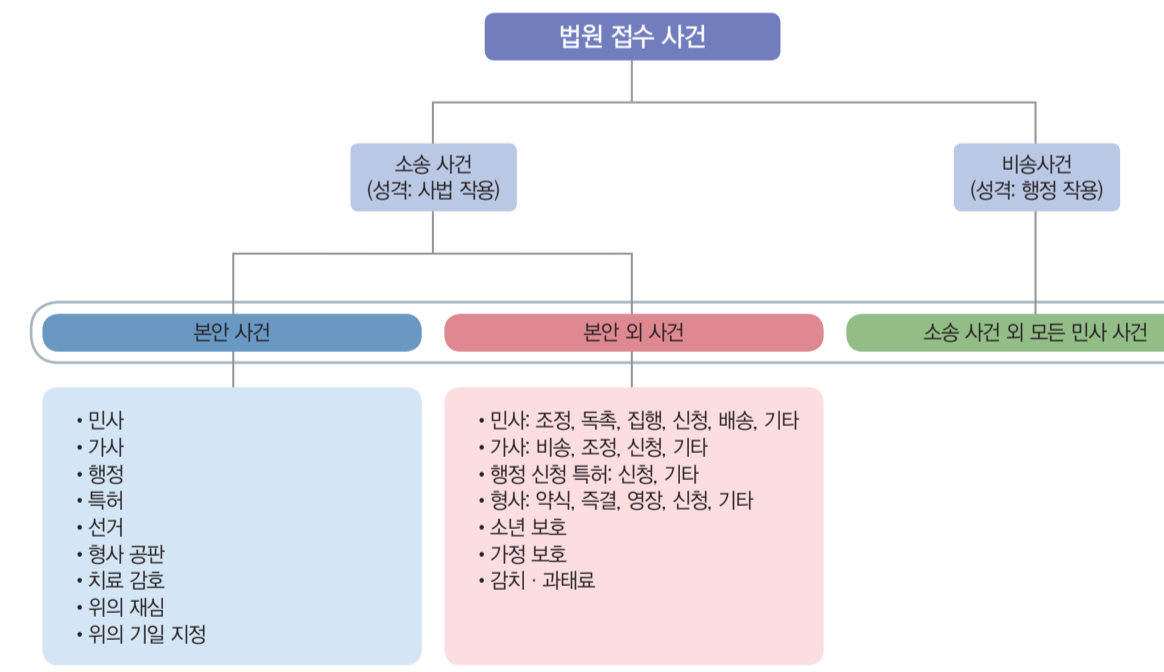


시·도별 법무법인과 변호사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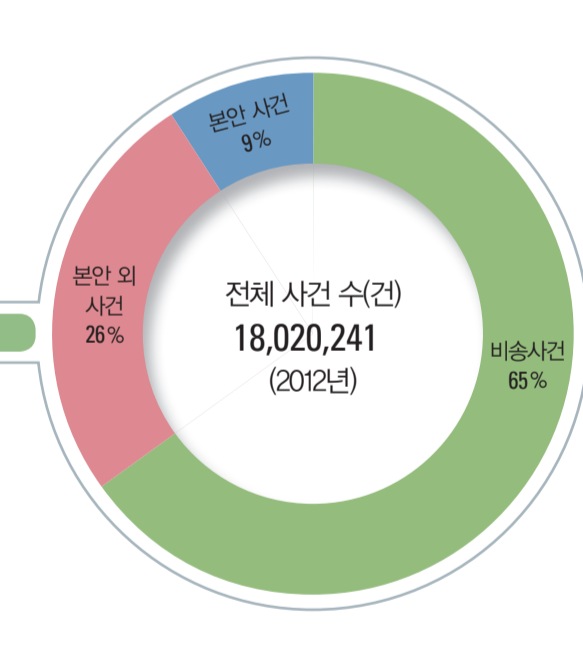


민사 재판은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재산권이나 법률 관계에 대한 분쟁에 관한 재판이다. 2001년 새로운 사건 관리 방식, 2002년 신 「민사소송법」, 2008년 변론 기일 중심의 민사 소송 절차를 위한 「민사소송법」 개정 등 당사자의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 보장과 사건의 적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법원은 민사 재판과 관련하여, 1, 2, 3심의 절차 외에도, 소액 사건 심리 절차, 민사 조정 절차, 민사 집행 절차, 재산 명시 및 재산 조회, 가압류 및 가처분 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형사 재판은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유·무죄를 가리고,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형벌을 가하는 재판이다. 법원은 형사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 및 기소 절차, 공판 절차,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구속 영장 실질 심사, 체포와 구속 적부심사 및 보석, 피고인의 자백의 증거 능력, 유·무죄 판결, 항소 및 상고 절차, 즉결 심판 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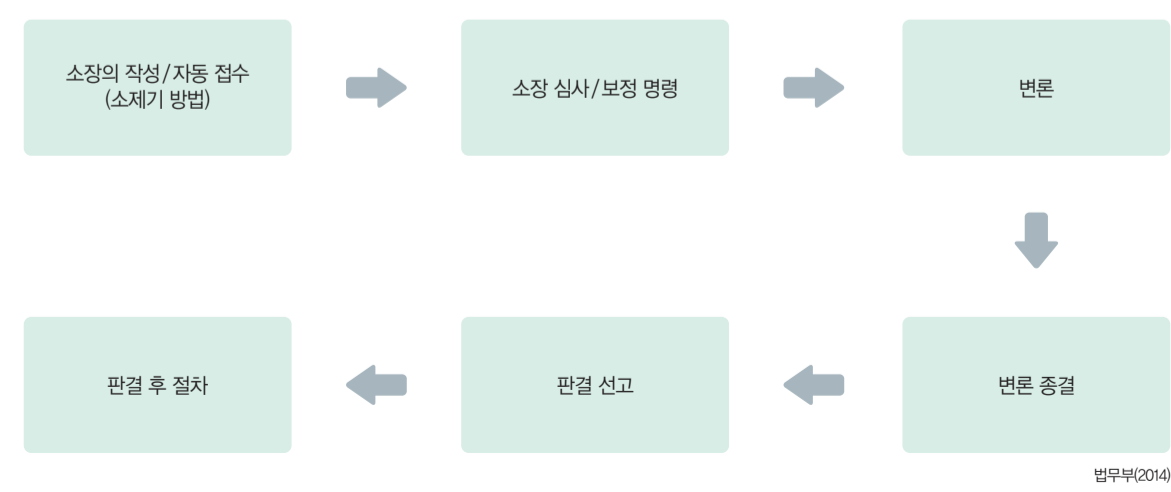
법원 접수 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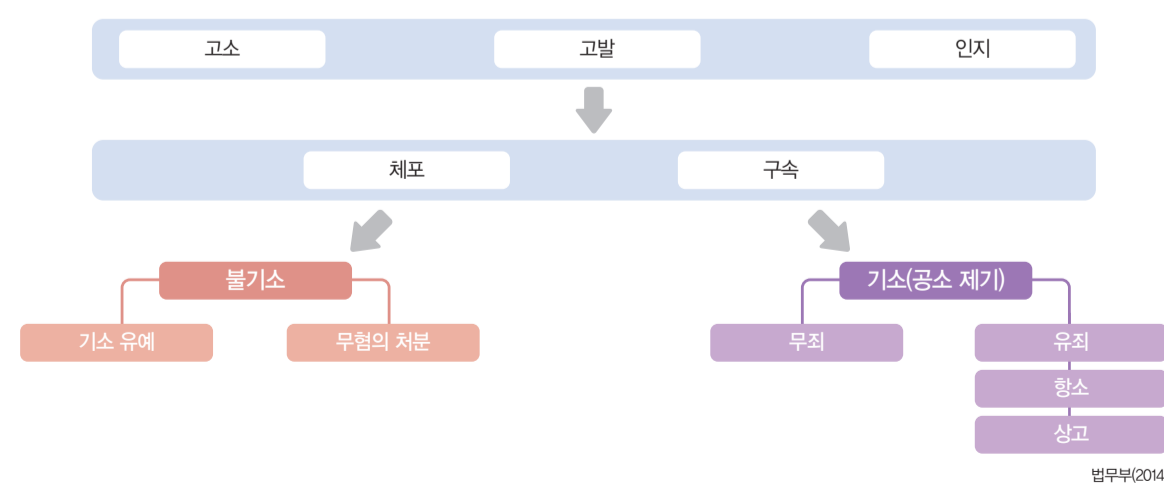
사건 유형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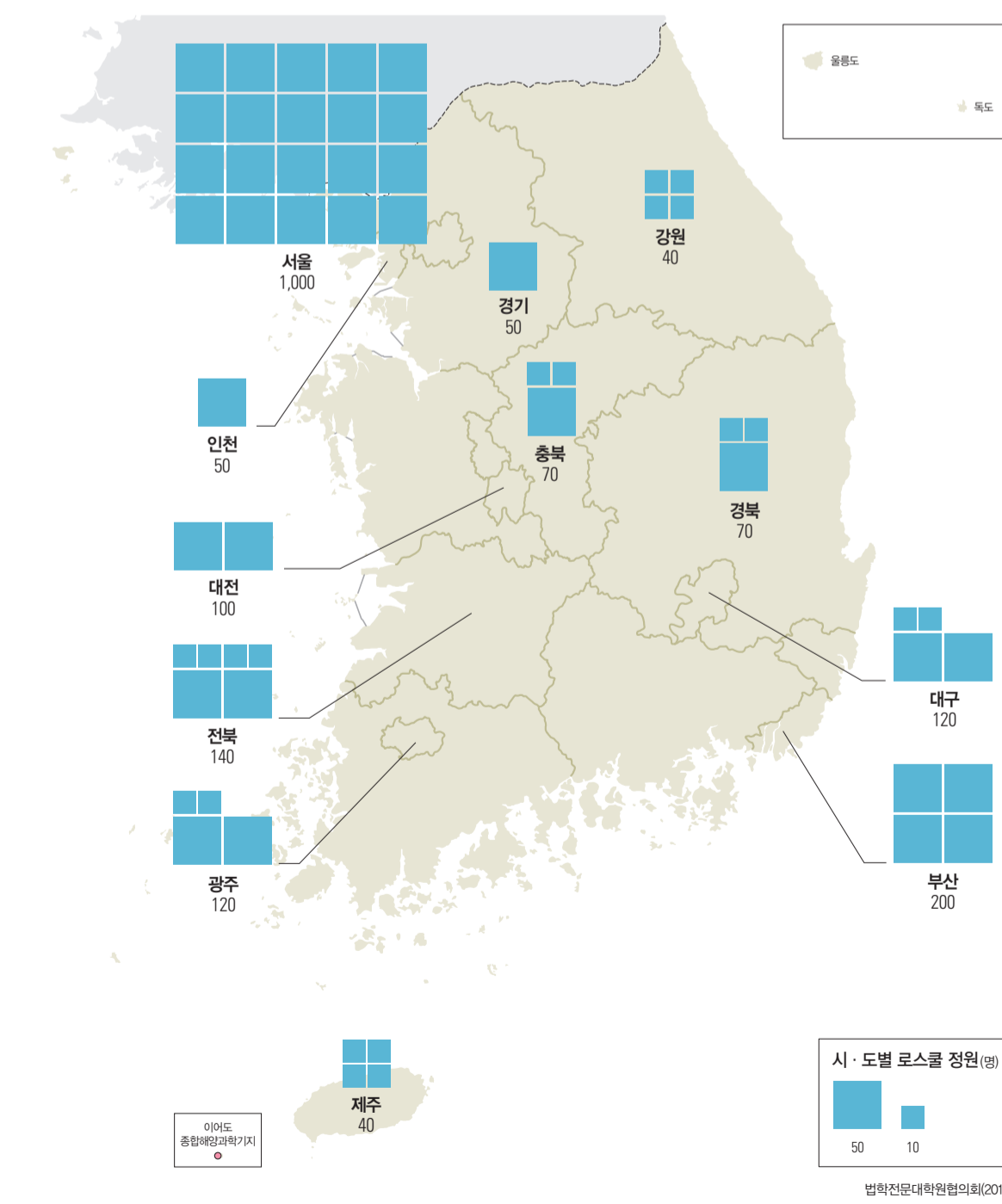
민사 소송 절차



형사 소송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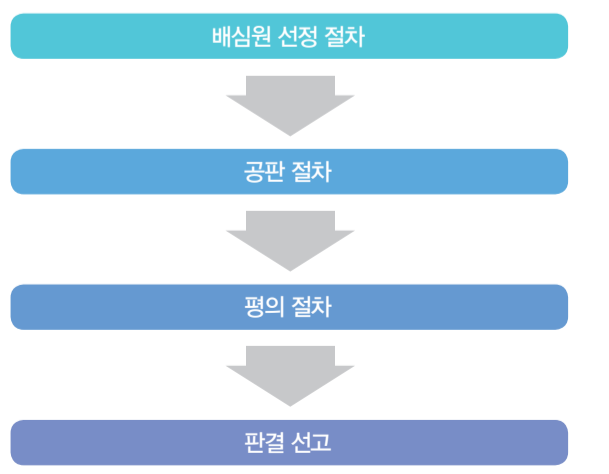
시·도별 로스쿨 정원



법원은 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모든 법적 분쟁을 심판한다. 또한 법원은 분쟁에 대한 심판 권한 이외에 부동산 및 동산·채권 담보 등기, 가족 관계 등록, 공판, 집행관 및 법무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 또는 감독할 권한을 가진다. 법원의 가장 기본적인 권한인 재판은 단독판사나 3인의 법관으로 구성된 합의체에서 진행된다.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원칙적으로 공개되며, 법정에서 재판은 국어로 진행된다. 군사법원을 제외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법관이 담당한다. 법관인 판사 임용은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사람 중에서 임용했던 기존의 즉시 판사 임용 제도가 없었고, 2013년부터 최소 3년 이상의 법조 경력자 가운데 판사를 임용하는 새로운 법관 임용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한편 2008년부터 국민 참여 재판이 시행되면서 일반 국민도 형사 재판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국민 참여 재판은 배심제와 참심제의 양 요소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적절히 수정·보완한 독자적인 제도이다. 국민 참여 재판의 특징을 보면, 배심원이 법관과 독립하여 판결하지만, 유·무죄에 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증거 관계 등에 관하여 법관의 의견을 들은 후 다시 판결하고 그 때로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다수결로 판결하는 점, 배심원들은 유·무죄에 관한 판결 외에 양형에 관해서도 의견을 개진하는 점, 법관은 배심원의 판결이나 양형 의견에 구속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현재 국민 참여 재판은 형사합의부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만 진행된다.

대립되는 이해 당사자 간의 법률 관계를 얽힌 존사법적인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지방법원은 그 관할 구역 내에서 등기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기 위하여 하부 기관으로서 등기소를 두고 있다. 등기소는 상업 등기, 부동산 등기, 선박 등기 등의 등기 신청 사건 처리, 등기 사항 증명서의 발급, 인감 증명 업무와 하며 그 밖의 일정한 사무에 대한 확정 일자 부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법원은 또한 호주제를 대체하는 가족 관계 등록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가족 관계 등록 제도는 국민의 신분 관계를 호주 중심으로 편제하였던 호적 제도와 달리, 국민의 신분 관계를 개인별로 가족 관계 등록부라는 공적 장부에 등록하여 이를 공시하는 제도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가족 관계 등록 사무(중진 호적 사무)를 국가 사무화하였고, 이에 따라 대법원을 가족 관계 등록 사무의 관장자로 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대법원이 등록 사무를 관장하더라도, 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대법원은 시·(구)·읍·면의 장에게 등록 사무를 처리하도록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

국민 참여 재판의 흐름



법원은 부동산 등기, 동산·채권 담보 등기, 선박 등기 등 등기 사무를 관장하는 국가 기관이며, 법원 중에서 지방법원과 동 지원이 그 관할 구역 내의 등기 사무를 관장한다. 이는 등기 사무가 단순한 행정 민원 업무와는 달리